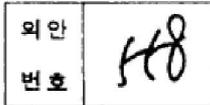


##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

제출년월일 : 1995. 3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내무부의 『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 계획』 및 시·도 화재예방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시·도화재예방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 사항등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규정을 삭제 (안 제30조)

- 지정수량 1/5이상 1미만인 소량 위험물 신고 삭제
-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신고 삭제
-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취급 신고 삭제

나. 소량 위험물,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,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(20만원 이하) 부과규정 삭제 (안 제43조 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개정근거 : 시·도화재예방 조례개정준칙안 <예방 13801 - 47 ('95. 2. 9)>
- 관련법규 :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27조

소 방 법

- 제17조(제조소등의 시설기준) ① 제조소등의 위치, 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 (이하 이장에서 “시설기준”이라 한다.)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.  
다만,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 
- 제27호(소량위험물의 취급)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 기준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조례 호

## 대전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중 개정 조례 (안)

대전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제2절의 제목 “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”를 “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”으로 한다.

제30조를 삭제한다.

제43조 제1항중 “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”을 “제28조,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”으로 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 )내지 (별지 제3호서식)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   | 행  | 개 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     |
|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제2절  |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<br>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   | 제2절 |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<br>저장 또는 취급기준 | (삭 제) |
| 제30조 | (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<br>신고) ① 영 별표 3의 지정수량의 5분의<br>1이상 지정수량 미만(일반주택,<br>기숙사, 의료원, 노인복지시설 및 농<br>기계용 유류취급소등은 제외)의 위험물<br>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 미만의<br>농예용 및 어패류 암식장용 난방용 위<br>한 위험물,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<br>5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<br>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<br>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<br>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br>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<br>호 서식에 의거 7일전에 신고하여야<br>한다.<br>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<br>시설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고<br>필증 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<br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<br>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시설을 양수<br>한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<br>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제43조(벌칙)① 제28조 내지 제31조의  
규절 에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 
과태료에 처한다.

② ~ ③ (생략)  
(별지제1호서식)

[소방위원회] 신고서

|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방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년 월 일      |           |
| 신고자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전화 번호      |           |
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(서명 또는 날인) |           |
| 지정취급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정지번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| 명칭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취급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급종류 | 취급대상       | 1일 최대취급수량 |
|  | 취급수량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취급 또는 취급<br>취급정밀의경요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취급 또는 취급<br>장소의 위치 및<br>설비의 개요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소방용설비의종류<br>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취급취급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취급필요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보장         |           |
|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비고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1. 별첨인 경우에는 명칭, 대표자성명, 주민등록소재지를 기입할 것.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2. 보장을 기입하지 않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3. 지정취급장소의 현내도를 첨부할 것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
제43조(벌칙)① 제28조, 제29조 및 제  
31조의 규절 -----  
-----,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  
(삭제)

(별지 제2호서식)

|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위원회 [주최단체명] 위임소 용도별지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제지기간<br>2일 |
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| 생년월일 |            |
| 주소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상표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생지년월일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등록번호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제정년월일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제정사유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위와 같이 제정되었기 관계사유(위정할 세코소등 발생회가등)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.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신고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②</span>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소장서장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기비</span>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 주최단체명   | 수우표    |      |            |
| 생지년월일   | 성      |      |            |

(삭제)

(별지 제3호서식)

1. ○ 제 목  
 위임소상 위임소상지선고통지

2. 목 적  
 주민등록번호

3. 주 소  
 대한민국헌법제정조제 제 조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위임소상지선고통지  
 경시정 제정선고통지발령통지를 통령함

4. 생지년월일:  
 5. 위 지:  
 6. 생지목적:  
 7. 신고사유: ○ 제정사유:  
 ○ 제정사유: 제 주 통령:  
 수우 표 제

년 월 일

소장서장 ②

(삭제)